

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심현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4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: 2019년 1월 14일
발 의 자: 심현정 의원 외 3명

1. 제안이유

지난 1년간의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
감사 실시 시기를 연말인 제2차 정례회(11월)로 조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“제1차 정례회”를 “제2차 정례회”로 개정(안 제4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1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『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제3조 1항에
따라 입법예고 생략

라. 집행기관 의견수렴 : 2019. 1. 3 ~ 1. 15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1차 정례회”를 “제2차 정례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감사)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해마다 <u>제1차 정례회</u>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4조(감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차 정례회</u> ----- ----- 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~ ⑦ (생략)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2조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